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하자”

女변호사, ‘가중처벌’ 제시
“아동 연령 19세로 올려야”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동학대처벌법이 규정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는 여성변호사회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균질을 위한 실포지엄’을 열고 ‘아동 살해는 일반 살인죄에 비해 죄질이 무겁지만 이를 엄하게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난해 아동학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만9209건이었으며 아동학대 장소로는 해당 가정이 9378건으로 가장 높았다. 학대를 한 사람은 친아버지가 5368건, 친어머니가 3478건, 계부 236건, 계모 238건 등으로 부모에 의한 학대가 많이 일어났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규정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중적 요소를 감안해도 사형상 6~9년 사이의 형민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여성변호사회 지적이다.

신진희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 아동의 나이가 18세가 되면 미성년자로 보호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며 “성인의 주택과 같은 피해아동에게 흥기나 미친가지리는 점을 고려한다면 살인의 고의를 적극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민법상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반면 민법에서 정하는 미성년자와 아동청소년보호법에서 보호대상인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연령이 달리 보호 조치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신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 아동의 나이가 18세가 되면 미성년자로 보호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며 “성인의 주택과 같은 피해아동에게 흥기나 미친가지리는 점을 고려한다면 살인의 고의를 적극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도 피해아동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용주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11일 한옥마을과 전통문화유산 견학을 위해 전주를 방문한 이용우 한국국학진흥원장과 함께 전통문화전당을 둘러보고 있다.

국학진흥원 직원 130여명 전주 방문

경기전 등 전통문화유산 답사

전주시가 전통문화유산 조사연구에 힘써온 한국학 전문가들과 대한민국 기록문화 진흥을 위해 상호 공조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11일 이용우 원장을 비롯한 한국국학진흥원 직원 130여명이 전통문화유산 답사를 위해 완판본의 도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한국국학진흥원 방문단은 이날 대한민국 무형유산의 보고인 국립무형유

산원 상설전시실 견학을 시작으로 오목대와 향교, 완판본문화관, 경기전(전주사고) 등 한옥마을 일원을 둘러보며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의 천년 역사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단은 조선시대 목판 인쇄를 대표하는 전주의 완판본·문화와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정신의 숲’ 설립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전주정신의 숲은 전주관련 각종 인문학적 기록물을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시는 도서관과 기록관·박물관을 융합한 ‘라커비움’ 형태

와 디지털 플랫폼이 결합된 기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전주정신의 숲(이하 정신의 숲) 설립을 위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등 27명이 진흥원을 방문했으며, 양 기관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 기록문화 진흥을 위해 상생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시는 향후 전주정신의 숲과 안동한국학진흥원 공동TF를 구성, 양 지역 기록문화의 진흥·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김영재기자

아내 노출 사진 SNS 올린 4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임시호 판사)은 11일 아내의 노출 사진을 몰래 활용해 SNS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 종량구 지택에서 아내 A씨(39)가 영등이를 드러낸 채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같은 해 12월 원주 봉동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SNS에 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주 기자

전주 팔복동 ‘새뜰마을회관’ 개소

생활여건 개선 거점공간 마련

나후된 전주시 팔복동 노후주거지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거점 공간이 마련됐다.

전주시는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주민 커뮤니티공간 ‘새뜰마을회관’을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뜰마을회관은 팔복 새뜰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 내 전주천 종로가설(추천 대교~서곡광장) 공사를 위해 매입된 건물(신현아연 101호, 102호)을 리모델링했다.

이곳은 팔복새뜰마을 미스터풀랜 수립 후 정식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기 전까지 마을활동가와 주민들의 소통 창구이자 주민들이 교육 및 공동체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마을회관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을활동가가 상주해 인근 주민들을 맞이하게 되며 주민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해 새뜰마을 미스터풀랜 수립을 위한 의견을 제안

하고, 함께 모여 마을개선을 위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전주시가 지난해 3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오는 2018년 까지 국비 50억원 등 총 71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팔복동 준공업지역 내 노후주거지 밀집지역(4만8000㎡)을 대상으로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휴먼케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미스터풀랜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이달 중순부터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생활기반시설에서부터 공동 이용시설 및 공동체 프로그램까지 마을의 중요자들을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결정하는 ‘마을회의’를 8차례 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재기자

보이스피싱 중국인 붙잡아

경찰 사칭 사찰 주지로부터 8000만원 인출 유도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80대 노인을 유인해 8000만원을 훔쳐려 한 30대 중국인이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더진경찰서는 11일 보이스피싱으로 원주군의 한 사찰 주지스님(A(86)씨)의 돈을 훔쳐려 한 혐의(절도미수)로 중국인 리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흑룡강성 출신의 리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은행계좌 비밀번호가 유출됐으니 현금이 인출될 수 있다. 현금을 모두 인출해 전주의 한 대형마트 사물함에 보관하면 안전하게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A씨가 인출한 현금을 기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씨의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넘어간 A씨는 원주의 한 농협에서 8000만원을 인출해 가방에 담은 뒤 리씨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전주로 향했다. 전주시 인후동 교차로에서 택시에서 내린 A씨는 전주지역 지리를 몰라 때마침 대통령의 전주 방문 경호를 위해 배치된 경찰에게 길을 물었고, 스님의 통화를 엿듣고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경찰과 농협 직원 기지로 A씨가 인출한 돈은 다시 은행 금고에 밀기고 전화 속 사기꾼이 지시한 대형마트 사물함에는 빙 가방만 넣어뒀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절도와 결합한 형태의 범죄로 번개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범죄 피해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수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

익산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도지사옹구제 기본법 제6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협력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개획(안)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 분	단 계	1 등 류	2 등 류	3 등 류	
노 선 연 장 (m)	연 장 (m)	노 선 연 장 (m)	노 선 연 장 (m)	노 선 연 장 (m)	
기정	16	9,418	46,1470	8	3670 445,156 4
변경	16	7,999	442,905	6	7,225 435,785 9
기정	1	5,702	425,127	1	5,702 425,127
변경	1	5,702	420,959	1	5,702 420,959
기정	대로	-	-	-	-
변경	대로	-	-	-	-
기정	기장	6,030	7,954	1	6,030 7,954 1
변경	기장	2	201	1	201 2,507
기정	수로	19	9,068	28,398	6 1,008 19,739 9
변경	수로	7	2,093	19,198	4 1,467 14,523 2

라. 결정(변경) 사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정제에 대비하여 우선해제검토대상 시설증정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의 해제 및 변경

2. 일정기한: 신분 제출 예상일로부터 11일간

3. 일정장소: 익산 시청 건설교통과 도시기획과

4. 의견제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시민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도시기획과(063-859-5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관계도서: “개계 생략”